

'05. 12. 23(금)
제245회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審 査 報 告 書

2005. 12. 23.
제245회 정례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11월 14일

○ 회부일자 : 2005년 11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5. 12. 12 :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 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예 따라 도지사 권한의 현지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기업지원과】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예 따라 “안전검사대상 공

산품에 대한 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되어 규칙에서 위임 하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

【환 경 과】

- 「악취방지법」 제정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악취의 규제” 조항 삭제에 따라 위임사무에서 삭제.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 관련 사무”를 현실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고 현지성 및 원거리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현지성이 강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를 주민의 편의도 모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

【교 통 과】

- 「삭도·궤도법」 개정에 따라 “삭도·궤도사업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의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사무에서 삭제.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령의 제 정 및 개정에 따라 도지사 권한의 현지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한 사무'는 중앙정부의 고유사무로써 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되어 처리하던 사무를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일부개정(2005.5.26)으로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임.

※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란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섬유, 화학, 금속, 생활용품분야의 39품목)

○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으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서 규정하던 '생활악취의 규제' 조항이 「악취방지법」의 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인 '생활악취의 규제' 사무를 삭제하는 것이며,
-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 처리하던 '폐기물과 관련한 사무'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2004.11.13)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3. 12. 31일 부칙 제7043호로 제정되어 2005. 1. 1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 맞게 사무를 분리하는 것임.
-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관련 사무'는 현실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고 현지성 및 원거리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위임하는 것이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는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임.

○ 끝으로 교통과 소관으로는

- 도지사의 권한사무 중 위임에 의해 시장·군수가 처리하던 '삭도·궤도사업에 관한 사무'가 상위법령인 「삭도·궤도법」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사무의 위임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 삭도·궤도의 정의

· 삭도 : 공중에 설치한 빗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예/ 케이블카, 스키장 리프트)

· 궤도 : 지상에 부설한 궤도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예/ 철도, 지하철, 관광열차)

- 상기와 같이 소관분야별 관련법규의 제·개정에 따라 사무처리에 대한 명확성과 적정성 등을 기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여겨짐.
- 다만,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폐기물관련 사무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는 현지성이 강하고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임 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바 시군별 업무량 분석을 통한 적정한 인력과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일련번호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 업 지원과	26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한 다음사항 가. 개선·과기·수거명령 등에 관한 사항 나. 위해사실 공표 및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다. 보고 및 검사 등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제15조 동법 제15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24조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환경과 소관 일련번호 제19호를 삭제하고, 일련번호 제20호 내지 제30호를 각각 제19호 내지 제29호로 하며, 일련번호 제28호(중전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일련번호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과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사항 가.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및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인정 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명령 라.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마.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 차.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 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타. 청문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31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의2 동법 제44조의2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57조 동법 제63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과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보관기간 연장 승인,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표기 또는 부착크기에 대한 조정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신고 수리, 건설공사 현장 이외에서의 재활용 승인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수리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아.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 차. 보고·검사 등 카. 방치폐기물의 발생 예방조치·이행상황 점검요구, 처리 명령, 처리이행 보증 조치 타.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행정대집행 파. 방치폐기물의 처리 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및 보험금의 수령 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위한 청문 거. 행정처분 너. 과태료 부과·징수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p> <p>동법 제21조, 제22조</p> <p>동법 제23조</p> <p>동법 제25조, 제26조</p> <p>동법 제27조</p> <p>동법 제28조</p> <p>동법 제29조</p> <p>동법 제30조</p> <p>동법 제31조, 제33조</p> <p>동법 제34조</p> <p>동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p> <p>동법 제45조</p> <p>동법 제46조</p> <p>동법 제57조</p> <p>동법 제61조</p> <p>동법 제66조</p>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교통과 소관 일련번호 제5호를 삭제하고, 일련번호 제6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사무명	근거법령
번호	번호			번호	번호		
기업 지원과	1~25	(생략)		기업 지원과	1~25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26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한 다음 사항 가. 개선·과기·수거명령 등에 관한 사항 나. 위해사실 공표 및 교환환불 수리 등의 명령 다. 보고 및 검사 등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 동법 제15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24조
환경과	1~18	(생략)		환경과	1~18	(현행과 같음)	
	19	◦생활악취의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삭제>	<삭제>	<삭제>
	20~28	(생략)			19~27	(현행과 같음)	
	29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사항 <신설>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영업정지명령 다. 과징금의 부과 징수 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마. (생략) 바. 휴업·폐업 등의 신고수리 <신설> 사. (생략) <신설> <신설> 아. (생략) 자. (생략)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31조 제3항 동법 제42조		28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사항 가.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및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인정 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포함)적정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명령 라.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마.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바. (현행과 같음) 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 폐기물 처리 자. (현행과 같음) 차.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 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타. (현행과 같음) 파. (현행과 같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31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의2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환경과	30	(생 략)		환경과	29	(현행과 같음)	
	<신설>	<신 설>	<신 설>		30	<p>○ <u>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사항</u></p> <p>가. <u>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 보관 기간의 연장 승인, 수집 운반차량에 대한 표기 또는 부착크기에 대한 조정</u></p> <p>나. <u>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포함) 적정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u></p> <p>다. <u>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u></p> <p>라. <u>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 취소영양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징수</u></p> <p>마. <u>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신고 수리, 건설공사 현장 이외에서의 재활용 승인</u></p> <p>바. <u>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u></p> <p>사. <u>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u></p> <p>아. <u>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 기관과의 협의</u></p> <p>자. <u>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u></p> <p>차. <u>보고·검사 등</u></p> <p>카. <u>방치폐기물의 발생 예방 조치 이행상황 점검요구, 처리명령, 처리이행 보증 조치</u></p> <p>타. <u>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행정 대집행</u></p> <p>파. <u>방치폐기물의 처리 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및 보험금의 수령</u></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p> <p>동법 제21조, 제22조</p> <p>동법 제23조</p> <p>동법 제25조, 제26조</p> <p>동법 제27조</p> <p>동법 제28조</p> <p>동법 제29조</p> <p>동법 제30조</p> <p>동법 제31조, 제33조</p> <p>동법 제34조</p> <p>동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p> <p>동법 제45조</p> <p>동법 제46조</p>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과	<신설>	<신설>	<신설>		30	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 명령을 위한 청문 거. 행정처분 너.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57조 동법 제61조 동법 제66조
교통과	1~4	(생략)		교통과	1~4	(현행과 같음)	
	5	<p>◦ 삭도·케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공사기간의 지정</p> <p>나. 준공검사</p> <p>다. 시설변경의 허가</p> <p>라. 명의변경신고 등의 수리</p> <p>마. 필요사항의 보고명령 및 시설에 대한 검사 지시</p> <p>바. 전용삭도등에 대한 준용 사항 (사용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준공검사, 시설변경의 신고, 사용의정지, 폐지의 청문, 전용삭도·케도의 양도양수합병해산 휴지폐지상속신고의 수리, 안전검사보고검사 수수료)</p> <p>사. 삭도·케도사업의 허가 및 허가의 변경</p> <p>아.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청문</p> <p>자. 안전검사, 검사의 최고, 안전검사 명령, 사용정지 검사기간 연장 및 유예</p> <p>차.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p>	<p>삭도·케도법 제8조</p> <p>동법 제13조</p> <p>동법 제14조</p> <p>동법 제17조</p> <p>동법 제30조</p> <p>동법 제34조</p> <p>동법 제4조</p> <p>동법 제16조</p> <p>동법 제27조</p> <p>동법 제38조</p>		<삭제>	<삭제>	<삭제>
	6~11	(생략)			5~10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취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표시등이 없을 때에는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의규정에 의한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파기 또는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7조 (검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판매·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공장·사업장·점포·창고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설비·안전검사대상공산품·서류·장부,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정기검사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검사표시등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수입·진열·보관 또는 사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파기·수거명령, 공표 또는 교환·환불·수리명령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2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에게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판매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기 또는 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생략)

【악취방지법-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를 “가스·입자상물질로서”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 이하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생활악취의 규제) ①악취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시설”이라 한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第25條(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③(생략)

④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인계서에 갈음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에게 1년 이상 계속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동일인에게 2년 이상 계속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간 제58조의2·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第43條의2(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①(생략)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한 경우(휴업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보험사업자로 부터의 보험금 수령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산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생략)

⑧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 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 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 예치를 명할 수 있다.

⑨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 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⑪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대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함에 있어서는 처리량 및 처리 기간 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第44條(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처리)①(생략)

②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동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한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생략)

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산 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공 하여야 한다.

第45條(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3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 폐기물중 동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처리된 방치폐기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치폐기물이 발생된 사업장을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승계한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변명 및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보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21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①(생략)

②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적정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생략)

제22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①~②(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취소·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다.

제25조(허가의 취소 등)①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과징금의 처분 등)①시·도지사는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생략)

③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지사가 사용하되, 그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①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는 것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현장외에서 재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목적 등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생략)

제28(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27조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①(생략)

②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0條(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 등)①~②(생략)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휴업·폐업 등의 신고)①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34조(보고·검사 등)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생략)

제41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대하여 방치폐기물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점검 및 당해 허가권자가 조치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과정에서 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 이행보증)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후, 그 사용을 개시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전까지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①시·도지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 보증 조치를 취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해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①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게 당해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이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당해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①시·도지사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방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 명령
2.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보증보험업자로부터의 보험금 수령

②(생략)

③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조합과 처리방법·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57條(청문)①(생략)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2.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제61조(행정처분)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과태료)① ~ ②(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생략)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2.(생략)

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고 한다)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④(생략)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1.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양쪽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보관의 경우

가.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보수공사 과정에서 폐 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미만 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도·궤도법】

제4조 (사업허가등)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공사준공)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삭도사업자"라 한다)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궤도사업자"라 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준공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공사를 준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준공검사)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

검사 전문기관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변경의 허가)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삭도·궤도시설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시 허가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허가의 취소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 내의 시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생략)

제16조의2 (과징금처분)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정지에 갈음하여 2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무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7조 (명의변경신고등)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생략)

제27조 (안전검사)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임시검사 : 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는 검사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식도 및 궤도시설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식도 및 궤도의 사용의 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식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30조 (보고·검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수시로 식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식도 또는 궤도의 공사, 운송 및 보선의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생략)

제34조 (전용식도등에 대한 준용) 제4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3,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7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전용식도등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삭도사업"은 "전용삭도"로, "궤도사업"은 "전용삭도"로, "삭도사업자"는 "전용삭도의 시설자"로, "궤도사업자"는 "전용궤도의 설치자"로, "허가"는 "신고"로, "사업"은 "사용"으로, "사업허가의 취소"는 "사용의 폐지"로 본다.

제3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 ⑥